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안전보건조치확보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순서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법 개요
 -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심
- 노동조합의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2장 중대산업재해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제3장 중대시민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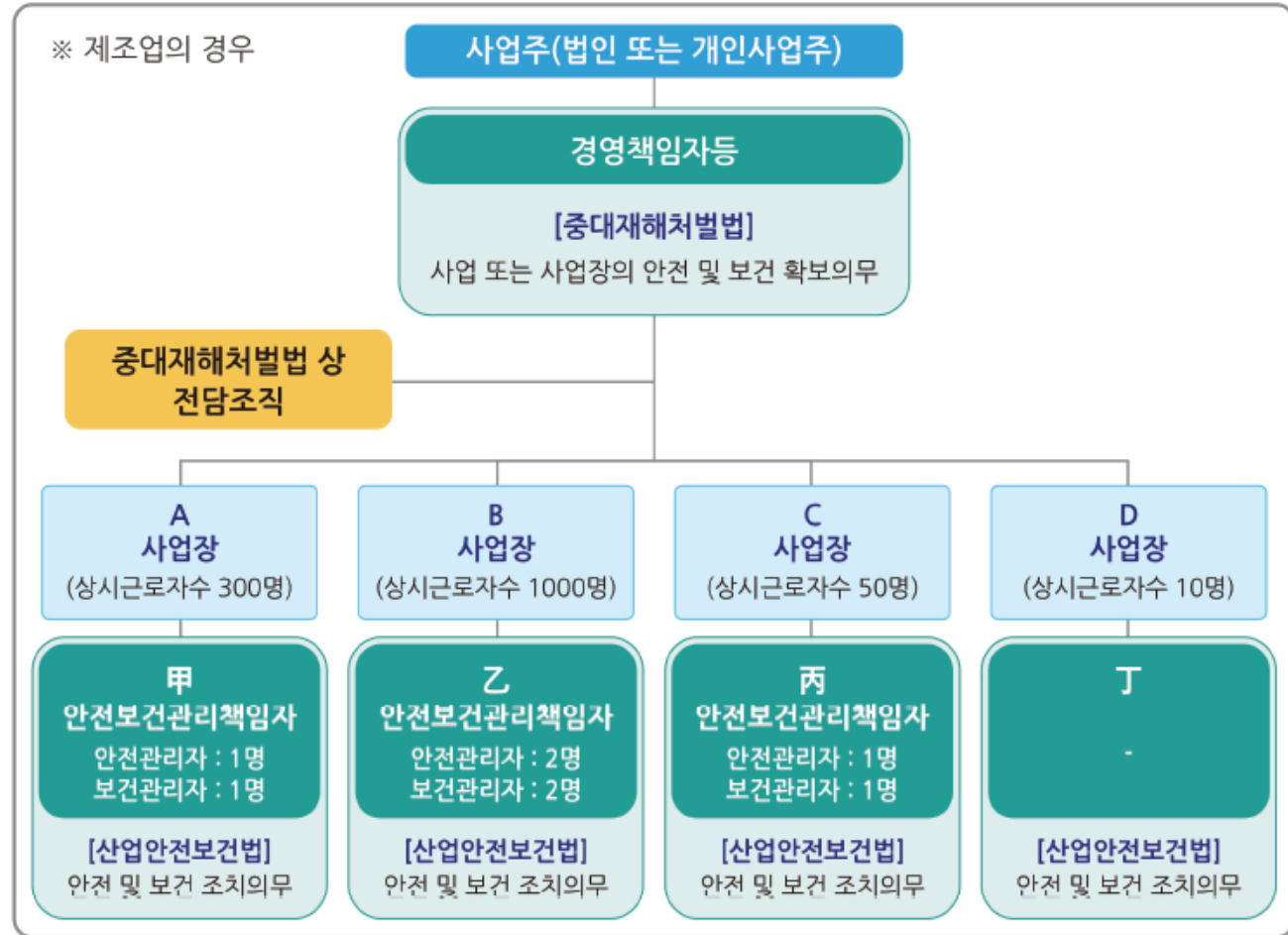
-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제4장 보칙

-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 목적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법률 체계	적용	관할	위반 구속력
국회	헌법	모든 국민	헌법재판소	
국회 (환노위 및 법사위)	산업안전보건법 (12장 175조)		법원	형사처벌 (벌금, 구속)
대통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 규제 심사 ▶ 법제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편 31장 673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사업장	행정청	행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 등)
	고시, 예규, 훈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등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대상 양벌규정 : 5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교육 수강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질병 사망 포함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
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
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급성중독, 독성간염, 감염성 질환
산소결핍증, 급성방사선증, 열사병

2020년 노동재해 통계

	근로자수	총계		사고		질병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산재법상 재해	18,974,513	108,379	2062	92,383	882	15,996	1,180
공무원재해	1,221,322	6211	65	5701	26	510	39
군인재해	188,875	517	37	440	10	77	27
사립학교교직원 재해	327864	944	1	845		99	1
선원재해	14793	715	16	715	16		
어선원재해	53777	4098	88	3814	73	284	15
농어업인안전보험	874581	52811	280	36727	267	16084	13
소계	21,655,725	173675	2549	140625	1274	33050	1,275

산재보험승인 직업성 질병(2020년)

• 직업성 질병 사망

- ✓진폐증 412명
- ✓심장질환 263명
- ✓뇌혈관질환 200명
- ✓직업성 암 162명
- ✓정신질환 61명
- ✓급성 중독 등 사망 42명

• 급성 중독 등

- ✓감염성 질환 234명
- ✓직업성 암 162명
- ✓직업성 피부질환 32명
- ✓화학물질 중독 29명
- ✓물리적 유해인자(전리방사선, 이상 기압 등) 30명
- ✓기타 26명

-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등은 비치명적 비급성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진폐증 사망은 노출, 진단, 사망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법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낮음.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고용노동자
다수 사업에 종사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공기관의 장
+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안 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2장 중대산업재해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제3장 중대시민재해
 -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제4장 보칙
 -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도급인 5명 이상, 수급인 5명 미만
도급인 5명 미만, 수급인 5명 이상

파견, 공무원, 이주노동자, 사무직

장소적 개념으로 사업장 정하지 않는다

본사와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강)**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 의무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강)**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6조 관리감독자
- 제17조 안전관리자
- 제18조 보건관리자
-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 · 조언
-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제22조 산업보건의
-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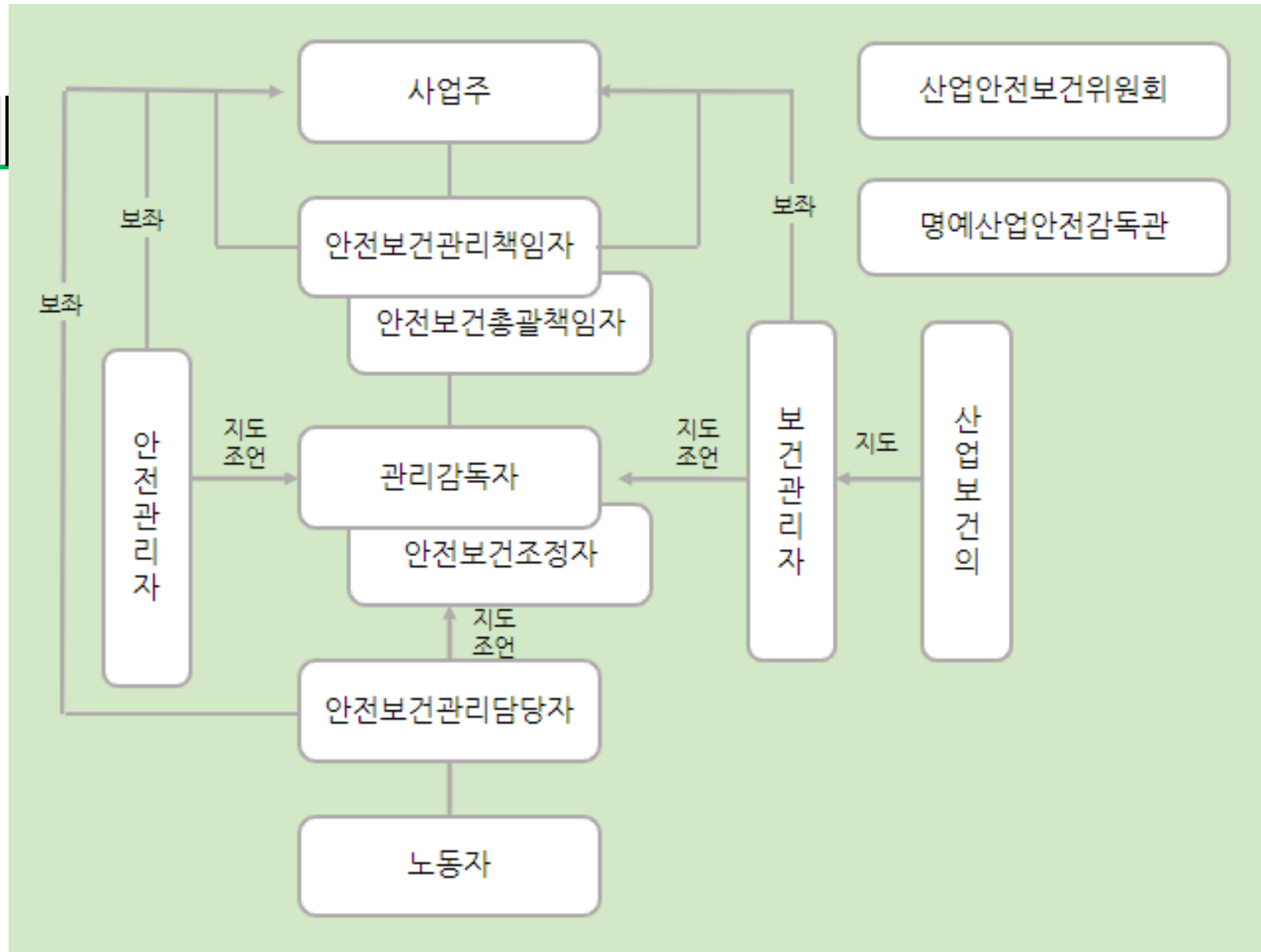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절차
-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체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 **체계는 조직 구성과 역할을 넘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의미**

따라서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
 -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
- 구체적 수단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시행령)

-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위험성평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산안법 해당 경우)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500명 이상, 산안법상 조직이 3명 이상)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 시행령 제4조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보다 폭넓은 것.
-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 반복적인 재해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대책이나 경영 차원의 노력이 반영돼야 .
- 조직의 특성과 규모에 적합한 것.

공사는 절대안전 기반 시민행복 도시철도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공사는 안전이 최우선 핵심가치이며 기본이념임을 인식하고, 모든 정책사항 추진시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공사는 사전 예방중심의 안전관리활동에 있어서, 경영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사고 및 장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는 안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자원을 제공·배분한다.
4. 공사는 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성과의 주기적 확인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5. 공사는 최고 수준의 안전경영을 위하여 안전관련 법규와 사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구현
목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경영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다.• ○○○교육청은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내재화한다.• 모든 근로자는 무재해(무사고)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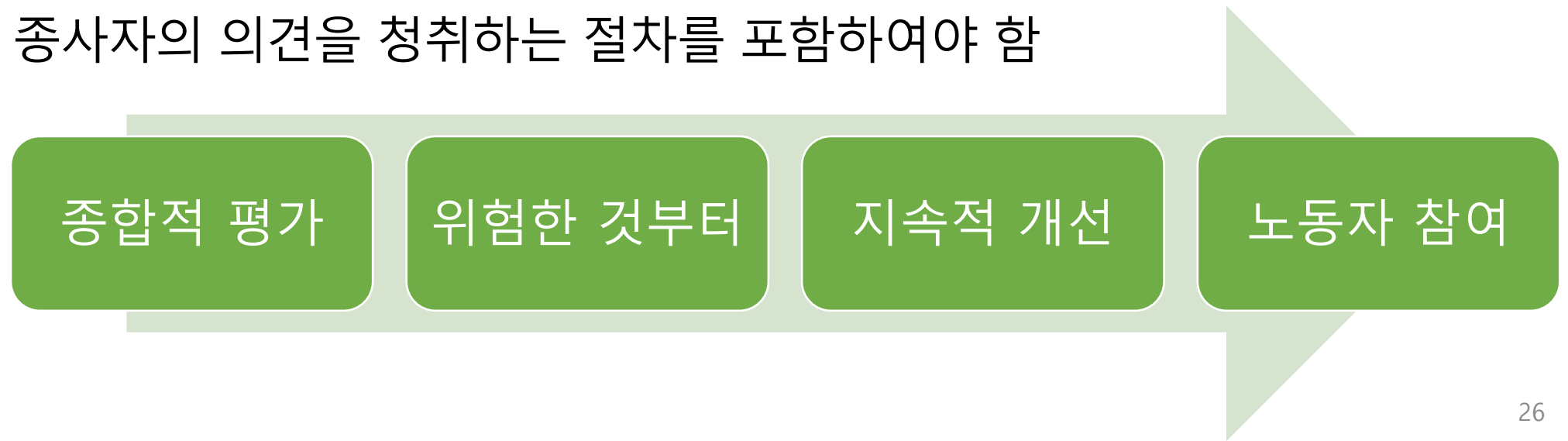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보고 + **필요한 조치 이행**
-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유해·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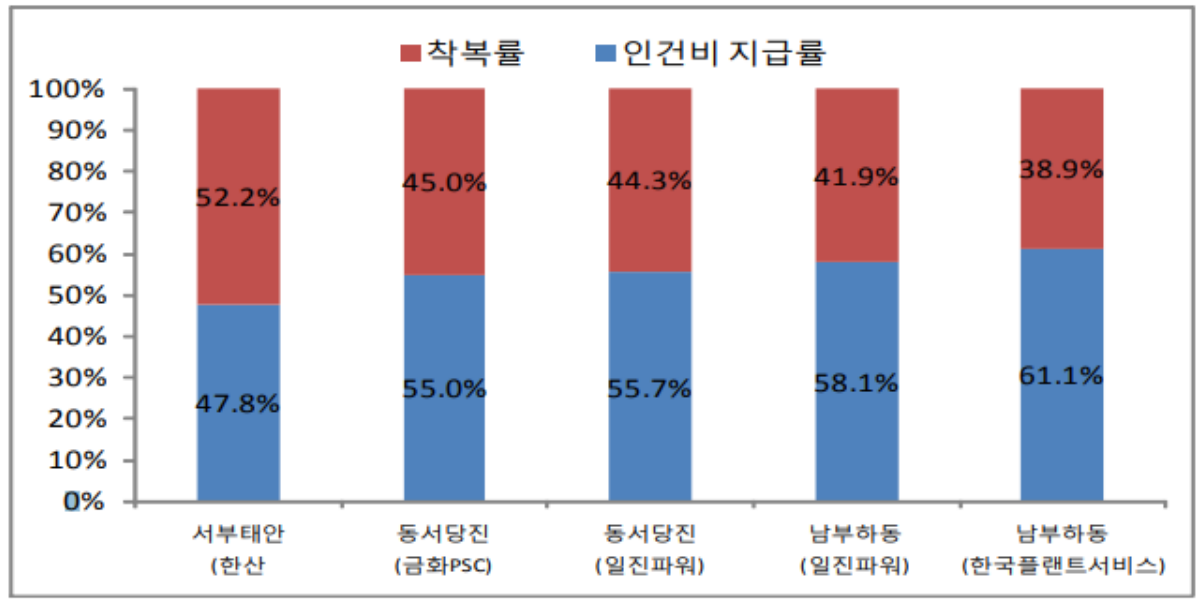
3)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 시행령 제4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이나 용역 등을 매개로 하여 노무를 제공 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특히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편성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이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함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021.11



[경상정비 직접노무비 중 인건비 지급율과 착복률 추정]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2019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시행령 제4조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2020년 가을 한 사업장 사례

- 한 사업장 노동자 3명이 이유 없이 간수치 증가한 것 발견, 비소 2차 검사 실시
 - 3명 모두 요중 비소증가 소견 보여 C1(직업성 요관찰자)으로 판정함
 - 사업장에서 해당 전문의에게 왜 비소검사 추가했는지 문의하고 이에 답변함.
 - 이후 병원장과 동료 전문의가 판정 수정 압력, 거부 후 해고됨.
-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문제
- 이 상황에서 비소 관련 건강문제 발생, 중대산업재해 해당한다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5)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산보위 운영 중인 사업장은, 산보위 실효성 높일 수 있는 기회!
- 산보위 이외의 의견 수렴 절차도 물론 가능
- 수렴된 의견에 대한 평가 및 판단,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에 대한 점검 : 산보위에서!

6)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시행령 제4조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 산안법 내용을 상회하는 매뉴얼 마련 : 자세한 내용은 **4강에서**.
 - 작업 재개와 관련된 기준 명확히 할 것
 - **종사자의 작업 중지 요건**을 실질화 :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 → 안전기준, 보건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나 질병 발생 위험이 있을 때

7)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자세한 내용은 3강에서!

8) 전문인력 배치

- **시행령 제4조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대부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인 이상 50명 미만의 위험 업종

9) 안전보건 전담조직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00 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or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 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
-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를 판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 제5조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원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 그러나 관련법률을 적시하는 방식은 아님.
 - 정부 여러 자료에서 근로기준법 현재 제외 :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 조치

-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제38조 안전조치
- 제39조 보건조치
-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제42~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이행
- 제44~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심사, 이행

- 제47조 안전보건진단
-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 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 방
-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편 보건기준

-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의 예방
-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 방
-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 제5조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된 시행령에 따른다.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
그러나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탈법 상황.

이제 이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음.

실명의 이유



미디어오늘, 2016.3.10 기사 인용

- 2015~2016년 세척제로 메탄올 사용하던 파견 노동자들 6명 실명
- 삼성 LG 휴대폰 부품 제작 하청 업체
-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 함.
- 작업환경측정 등 실시 안 함
- 천 마스크 외 보호구 지급 안 함.
- 유해물질 취급장에서의 안전교육 의무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과 제4항 모두 위반

이 사고를 돌아봅시다.

- MSDS 허위 작성 문제
- 환경 규제물질과 산업안전 규제 물질 통합적 소통
- 작업환경측정 : MSDS에만 기반
- 특수검진/일반검진 : 이유없이 간수치가 오른 10여명
- 내과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을 때 까지 직업환경의학과 연계 안 됨. 업무 복귀 후 다시 간수치 증가하여 협진 의뢰

세척제 취급과정 급성중독 발생경보

'22.2월 창원 소재 전자제품용 동부속품 생산 사업장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에 노출되어 독성간염 발생



【 재해원인 】

■ 유해물질 성분 및 유해성 미인지

기존 세척제(디클로로메탄)가 환경규제물질(22.1)로 지정됨에 따라 대체물질 변경 과정에서 더 독성이 강한 트리클로로메탄(97년부터 환경규제물질 지정)으로 물질 대체

※ 산안법상 노출기준(TWA)
디클로로메탄(50ppm) / 트리클로로메탄(10ppm)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세척공정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인해 세척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동자 노출

■ 방독마스크 미착용

세척작업시 방독마스크 미착용으로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



【 건강영향 】

■ 중추신경계 장애, 간·신장 손상 등

- 1) 중추신경계 : 중추신경계 억제
고농도 노출시 무의식, 혼수 발생
- 2) 간담도계 : 간수치 상승, 황달, 간비대 등 간손상 발생하며, 심할 경우 사망양발 가능
- 3) 비뇨기계 : 신장 손상
- 4) 피부 : 피부건조, 충혈, 홍반, 수포형성 등

【 예방대책 】

■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충분한 환기
세척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제거에 충분한 성능을 갖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가동

■ 개인보호구 착용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업자별로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등 지급, 착용

⇒ 국소배기장치 적정 설치·가동, 올바른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보건조치 없이 트리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세척제 (제품명: UKLEEN T6, UKLEEN 600, KAC-200 등 다양함) 사용작업은 일시 중단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 후* 작업재개 필요

*국소배기장치 설치, 세척공정격리(밀폐), 저독성물질 대체



환경법(화관법, 화평법) 개정으로 22년부터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척제를 변경하셨다면 제조사에게 구성성분을 다시 문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건강 이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두성산업 대표 입건... 제조·유통업체도 강제수사= 고용노동부는 독성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 미흡한 정황을 포착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관련 유해물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지난 18일 창원시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21일 오전부터 김해 소재 유해물질 제조업체와 창원 유통업체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개 팀 21명이 투입돼 세척액을 채취하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성산업에선 지난 10일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된 뒤 16일 제품 세척공정을 해온 노동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앞서 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노출기준인 8PPM의 6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두성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조치 등에서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사업주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

두성산업에선 세척액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돼 있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김해의 제조업체 측은 사전 협의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적법하게 제공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유통업체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유통업체도 사용업체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화학물질 급성 중독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는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에게 회사에선 연차를 소진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과제



산업안전보건법 기반 현장 노안 활동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노동안전보건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 이를 반영한 '경영' 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법
-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 을 기반으로 현장 노안활동 전개 필요

노동자 참여 제도 적극 활용

- 로펌 특수?!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 골몰하는 회사들
- 법 제정 및 실행 이후에도 사업주가 예방에 힘쓰도록 하려면 노조 역할 중요
-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중지권 행사 등 산안법상 노동자 참여 제도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봐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상 구축해야 할 안전보건체계에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 것.

재해 발생 이력 및 재해 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발생 이력 관리를 강조
- 재해 원인 규명으로 위험 요인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 일상적인 산안법 위반 사항, (산재 처리 여부와 별도로) 업무관련성 질환 이력, 근골유해요인조사나 위험성평가 개선 과제 내용 등 노동조합도 관리

시키지도 않은 일을
혼자 하다가...

문서에만 있던 2인1조
안전수칙 어겨야 가능한 업무

사회적 과제 : 소규모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거가 되는 의무 조항들이 없음.
 - 지금까지 전혀 관리되지 않음.
 - 처벌보다 접근과 지원, 여러 사업장을 아우르는 관리체제 수립이 급선무

사회적 과제 : 실제 적용 과정

- 직업성 암 : 중대재해 해당, 일반적으로 노출로부터 진단까지 10년 이상의 잠복기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 정신적 이상상태에 의한 자살 : 과로(노동시간), 직장내괴롭힘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 근로기준법을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많은 '질병' 중대재해는 적용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

: 경찰과 노동부 조사 → 검찰 기소 → 양형 포함 판결 → 사회적 반응

감사합니다

minchoi2015@gmail.com

